

# 2025년도 제2차 교육연구위원회 회의록

## I 개 요

- 일 시 : 2025. 2. 25.(화) 10:50~12:00
- 장 소 : 1호관 영상회의실
- 참석현황 : 재적위원 20명 중 참석 18명, 불참 2명
  - 참석위원(18명)
    - 박종태(위원장), 유우식(부위원장), 노영돈, 권정호, 이건설, 임정훈, 이준한, 김준석, 전경구, 김동배, 송현호, 장규환, 이승호, 최병조, 박용호, 박문주, 한민섭, 이남식
  - 불참위원(2명)
    - 김준호, 박지훈

## II 회의결과

- 제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융합자유전공대학 학과(부)전공 진입 지침 제정지침안
  - 안건요지 [제출자 : 융합자유전공대학장]

### 1. 제안사유

2024년 융합자유전공대학이 설립되었고 2025학년도부터 자유전공학부 및 국제자유전공학부 신입생이 입학함에 따라 학과(부)전공 진입에 대한 지침을 제정함으로써 학과(부)전공 진입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조	내 용
안 제1조	융합자유전공대학 자유전공학부 및 국제자유전공학부 입학생의 학과(부)전공 진입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함

안 제2조	학과(부)·전공 진입 대상 명시 및 진입시기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 정함
안 제3조	학과(부)·전공 선택의 자율성 존중을 위한 학과(부)·전공의 인원 제한을 두지 않음을 명시함
안 제4조	융합자유전공대학 설립 시 정원에 활용한 모수에 해당하지 않은 학과에 대한 진입 제한을 명시함
안 제5조	학과(부)·전공 진입 절차 및 방법에 대해 명시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인천대학교 학칙」

**제10조(대학, 대학원)** ① 본교에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글로벌정경대학, 공과대학, 정보기술대학, 경영대학, 예술체육대학, 사범대학, 도시과학대학, 생명과학기술대학, 융합자유전공대학을 둔다. 단, 융합자유전공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융합자유전공대학 운영 규정

**제10조(자유전공학부)** ①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은 1학년 말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 대학에 설치된 학과 중 하나에 진입하게 되며, 진입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국제자유전공학부)** ① 국제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은 1학년 말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 대학에 설치된 학과 중 하나에 진입하게 되며, 진입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합 의

- 교무처 학사팀 협의 완료 : 2024.11.20.(수)
- 법인지원팀 사전 자구 검토 완료 : 2024.11.25.(월)

라. 기 타

- 본부회의 보고 : 2025.02.03.(월)
- 교무회의 보고 : 2025.02.04.(화)
- 총장 방침 : 2025.02.05.(수)
- 의견 수렴 : 2025.02.05.(수) ~ 2025.02.13.(수)
- 사전 심사 : 2025.02.14.(목)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 제2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 ○ 안건요지 [제출자 : 교무처장]

#### 1. 제안사유

- 가. 2026학년도 대학 학생정원(모집단위) 조정사항 반영 및 편제개편에 따른 수여학위 현행화 등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학사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 나. 2024년 10월 22일 고등교육법 제23조의4 제3호 개정으로 우리대학의 학칙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학생정원 조정사항 반영 및 편제개편 : 별지 참조
- 나. 육아휴학 관련 사항 개정

-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나이, 학령을 만12세,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자 함
- 또한 자녀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만 16세,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의 자녀 돌봄, 양육을 지원하고자 함

	현행	변경
대상	- 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	- 임신·출산 또는 만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 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만16세 고등학교 1학년 이하 자녀
기간	2년이내	유지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제23조의4 제3호(공포일: 2024. 10. 22.)
- 인천대학교 정관 제43조(학칙의 제·개정)
- 인천대학교 학칙 제11조(학과(부) 및 입학정원)

나.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 총장방침 수립 : 2025. 02. 07.(금)
- 의견조회 : 2025. 02. 07.(금) ~ 02. 13.(목)
- 사전심사 : 2025. 02. 14.(금) ~ 02. 17.(월)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 2025. 02. 25.(화)
- 평의원회 심의 : 2025. 03. 13.(목) / 03. 20.(목)
- 이사회 심의 : 2025. 4월중
- 교육부 사후보고(편제개편) : 2025. 4월중

<별지>

○ 학칙 개정 주요내용

- 2026학년도 학생정원(모집단위) 조정안 (학칙 [별표 1] 개정)

2025학년도 입학정원		구 분 (증감)	2026학년도 입학정원	
모집단위	입학정원		모집단위	입학정원
무역학부	94명	명칭 변경 (증감 없음)	<u>Global Trade &amp; Service학부</u>	94명

- 편제개편 및 연계전공 신설에 따른 수여학위종별 반영 (학칙 [별표 2] 개정)

현 행			개 정 안		
대 학	학과(부)	학위명	대 학	학과(부)	학위명
인 문 대 학	일어일문학과	문 학 사	인 문 대 학	<u>일본지역문화학과</u>	문 학 사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언론학사	사회과학대학	<u>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u>	언론학사
글로벌경영대학	무역학부	무역학사	글로벌경영대학	<u>Global Trade &amp; Service학부</u>	무역학사
공 과 대 학	전자공학과	공 학 사	공 과 대 학	<u>전자공학부</u>	공 학 사
	메카트로닉스공학과	공 학 사		<u>바이오-로봇시스템공학과</u>	공 학 사
경 영 대 학	(신설)		경 영 대 학	<u>데이터과학과</u>	경영학사
예술체육대학	체육학부	체 육 학 사	예술체육대학	<u>스포츠과학부</u>	체 육 학 사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국제통상학사		<u>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u>	국제통상학사
				<u>스마트물류공학전공</u>	물류학사
				<u>IBE전공</u>	국제통상학사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전공명	학위명	구 분	전공명	학위명
연 계 전 공	(신설)		연 계 전 공	<u>미래교육디자인</u>	문 학 사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제3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 안건요지 [제출자 : 교무처장]

1. 제안사유

가. 2026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내역을 반영하여 학칙 시행세칙을 개정함으로써 학사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 [별표] 학과(부)·(전공)별 기준인원 개정

현 행			개 정 안		
대 학	학과(부)명	기준정원	대 학	학과(부)명	기준정원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94명	글로벌정경대학	<u>Global Trade &amp; Service학부</u>	94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인천대학교 정관」 제43조(학칙의 제·개정)
- 「인천대학교 학칙」 제11조(학과(부) 및 입학정원)
-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별표] 학과(부)·(전공)별 기준인원

나.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 총장방침 수립 : 2025. 02. 07.(금)
- 의견조회 : 2025. 02. 07.(금) ~ 02. 13.(목)
- 사전심사 : 2025. 02. 14.(금) ~ 02. 17.(월)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 2025. 02. 25.(화)
- 평의원회 심의 : 2025. 03. 13.(목) / 03. 20.(목)
- 교육부 사후보고 : 2025. 4월중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제4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비전임교원 인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안건요지 [제출자 : 교무처장]

1. 제안사유

교내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연구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교수’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연구교수 직급 추가(개정안 제2조제6호)
- 나. 연구교수 직급 임용절차 추가(개정안 제5조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인천대학교 비전임교원 인사 지침」, 「인천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임용 규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타
  - 총장 방침 : 2025. 2. 4.(화)
  - 의견 수렴 : 2025. 2. 4.(화) ~ 2. 11.(화)
  - 사전 심사 : 2025. 2. 12.(수) ~ 2. 18.(화)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 2025. 2. 25.(화)
  - 평의원회 심의 : 2025. 3월 중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제5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비전임교원 인사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안건요지 [제출자 : 교무처장]

1. 제안사유

- 가. 재직 중 사망한 전임교원 중 명예교수 추대 요건을 충족한 교원의 업적을 기리고자 명예교수 추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연구교수’ 직급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인천대학교 비전임교원 인사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임용, 재임용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재직 중 사망한 교원 중 자격을 충족한 교원에 대하여 명예교수로 추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 제5조 제2항 및 제3항, 제6조)
- 나.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연구교수 직급 신설 (안 제7장)
- 다. 연구교수 직급 채용 및 재임용 등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격, 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 (안 제33조~제3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명예교수규칙」, 「인천대학교 비전임교원 인사 규정」, 「인천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임용 규정」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 라. 기타
  - 총장 방침 : 2025. 2. 4.(화)
  - 의견 수렴 : 2025. 2. 4.(화) ~ 2. 11.(화)
  - 사전 심사 : 2025. 2. 12.(수) 2. 18.(화)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 2025. 2. 25.(화)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제6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인증제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안건요지 [제출자 : 교무처장]

1. 제안사유

가. 인천대학교 학생이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통하여 본교의 인재상과 핵심역량에 맞는 전인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 인증 범위의 확대를 통해 인증제도 자체의 저변을 확대하고, 나아가 우수 및 최우수 인재 인증 달성의 유인을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INU SURPRISE 인증제도 적용 범위 확대 및 인재 인증기준 추가  
- 인재 인증기준 추가 (제7조)  
- 인재 인증서 변경 (별지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 본부회의 보고 : 2025. 1. 6.(월)

- 교무회의 보고 : 2025. 1. 7.(화)

- 학생역량 인증관리위원회 심의 : 2025. 1. 8.(수)

- 총장 방침 : 2025. 1. 9.(목)

- 의견 수렴 : 2025. 1. 9.(목) ~ 1. 15.(수)

- 사전 심의 : 2025. 1. 16.(목)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 2025. 1. 21.(화)

⇒ 심의 결과 : “보류” (인재 인증 구분(최우수/우수/인재)별 비교과 점수 기준 등에 대해 재검토하여 추후 재상정

- 교무회의 재보고 : 2025. 2. 4.(화)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제7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교육 만족도 관리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안건요지 [제출자 : 기획예산처장]

1. 제안사유

- 가.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반영
- 나.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대상자 현행화

2. 주요내용

- 가. 「인천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부서명 변경
  - “전략평가팀” 에서 “기획평가과” 로 변경(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 “기획예산과” 에서 “기획평가과” 로 변경(제4조제2항)
  - “교무과” 에서 “학사팀” 으로 변경(제5조제2항)
- 나.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대상자 현행화
  - 유학생, 학부모 삭제(제5조제1항)
  - 학부모 삭제(제7조제3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생략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해당없음
- 라. 기 타
  - 본부회의 보고: 2025. 2. 3.(월)
  - 교무회의 보고: 2025. 2. 4.(화)
  - 총장방침: 2025. 2. 5.(수)
  - 의견조회: 2025. 2. 7.(금) ~ 2025. 2. 13.(목)
  - 사전심사: 2025. 2. 14.(금) ~ 2025. 2. 20.(목)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2025. 2. 25.(화)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제8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직원 성과평가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안건요지 [제출자 : 사무처장]

1. 제안사유

가. 「인천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직원 성과평가 지침의 [별표3] 평가단위별 평가자·확인자를 변경하고,  
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가산 점수 기준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시험종류별 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방식으로 변경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대학교 직원 근무성과평가 지침」 평가단위별 평가자·확인자 변경 (안 별표3)

구분	내용
변경	(연구처) 중국학술원 → (부속기관) 중국학술원 *3급이하 확인자: 연구처장→대의협력부총장 창업지원단 과·팀장 평가자 삭제

나. 직원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가산 점수 기준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운영하고자 직원 성과평가 지침의 [별표7]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별 가산점수표를 변경하고자 함.

(안 별표7)

구분	내용				
변경전	외국어	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			
	영어	토플 530점(CBT197점, iBT71점), 토익 700점, TEPS 625점, 토익스피킹 5급, OPIc IM2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60점 이상 그 밖에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어학능력검정성적 이상	0.25점		
	기타 외국어	新HSK 4급 이상, JPT 700점, HSKK중급, SJPT 6급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60점 이상 그 밖에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어학능력검정성적 이상	0.25점		
변경후	외국어	시험종류	성적별 평정점		
	영어		0.2점	0.3점	
			토플	85점~97점	98점 이상
			토익	750점~849점	850점 이상
			토플스피킹	IM3	IH 이상
			오픽	IM3	IH 이상
	기타 외국어		新HSK	4급	5급 이상
			JPT	750점~849점	850점 이상
			HSKK	중급	고급
			SJPT	6급	7급 이상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인천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 본부회의 보고: 2025.02.03.

○ 교무회의 보고: 2025.02.04.

○ 총장방침: 2025.02.05.

○ 직원인사위원회 심의: 2025.02.05.

○ 의견수렴: 2025.02.06.(목)~02.12.(수)

○ 사전심사 결과 회신: 2025.02.14.(금)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2025.2.25.(화)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제9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직원 임용 시행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안건요지 [제출자 : 사무처장]

1. 제안사유

- 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교육부의 공정채용 제도 안착을 위한 개선 권고 사항 이행
- 나. 응시자에게 보다 공정한 기회와 절차를 보장하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험위원 위촉 단서 조항 신설(안 제6조 제1항)

- 채용 절차 전반에 관여하는 채용 담당자 및 채용 담당 부서장은 시험위원 위촉 제한

나. 시험위원 회피·기피 조항 추가 및 대상 구체화(안 제6조 제6항)

- 심사위원 및 응시자의 제척·회피·기피 제도 운영 기준 수립 및 대상 구체화

다. 응시자 차별 금지 조항 강화(안 제8조)

-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원칙 명시
-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 금지 (현행: 학력, 연령 제한 금지 → 개정안: 성별, 신체 조건, 용모 등 추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합 의: 해당 없음
- 라. 기 타

- 본부회의 보고: 2025.02.03.
- 교무회의 보고: 2025.02.04.
- 총장방침: 2025.02.05.
- 직원인사위원회 심의: 2025.02.05.
- 의견수렴: 2025.02.06.(목)~02.12.(수)
- 사전심사 결과 회신: 2025.02.14.(금)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2025.2.25.(화)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제10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계약직원 인사관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안건요지 [제출자 : 사무처장]

1. 제안사유

- 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교육부의 공정채용 제도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보다 공정한 기회와 절차를 보장하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함.
- 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채용 단계별 필요한 사항을 규정화하여 채용 부서별 일원화된 기준을 적용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응시자 차별 금지 및 법률에 따른 우대사항 명시 조항 신설(안 제6조)
  - 응시자의 성별·신체 조건·용모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 금지 내용 신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우대사항 채용계획 명시 내용 신설

나. 채용 단계별 필요 사항에 대한 상세내용 명시(안 제7조)

- 채용공고 방법, 공고문 포함 내용, 접수기간에 대한 조항 신설
- 변경공고와 재공고 사유 및 절차에 대한 조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 총장 방침: 2025.02.05.(수)
- 직원인사위원회 심의: 2025.02.05.(수)
- 의견수렴: 2025.02.06.(목)~02.12.(수)
- 사전심사 결과 회신: 2025.02.14.(금)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2025.2.25.(화)

○ 심의결과 : 수정가결

# 2025년도 제2차 교육연구위원회 회의결과

구 분		안 건 명	심의결과
심 의	2-1	인천대학교 융합자유전공대학 학과(부)·전공 진입 지침 제정지침안	원안가결
	2-2	인천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원안가결
	2-3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원안가결
	2-4	인천대학교 비전임교원 인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가결
	2-5	인천대학교 비전임교원 인사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원안가결
	2-6	인천대학교 인증제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원안가결
	2-7	인천대학교 교육 만족도 관리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원안가결
	2-8	인천대학교 직원 성과평가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원안가결
	2-9	인천대학교 직원 임용 시행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원안가결
	2-10	인천대학교 계약직원 인사관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수정가결

## 2025년 제2차 교육연구위원회 서명부

1. 일 시 : 2025. 2. 25.(화) 10:50

2. 장 소 : 대학본부 5층 영상회의실

연번	구분	직 위	성 명	서 명
1	위원장	총장	박종태	박종태
2	부위원장	교학부총장	유우식	유우식
3	위원	대외협력부총장	노영돈	노영돈
4	위원	대학원장	권정호	권정호
5	위원	인문대학장	이건상	이건상
6	위원	자연과학대학장	김준호	
7	위원	사회과학대학장	임정훈	임정훈
8	위원	글로벌정경대학장	이준한	이준한
9	위원	공과대학장	김준석	김준석
10	위원	정보기술대학장	전경구	전경구
11	위원	경영대학장	김동배	김동배
12	위원	예술체육대학장	송현호	송현호
13	위원	사범대학장	장규환	장규환
14	위원	도시과학대학장	박지훈	
15	위원	생명과학기술대학장 직무대리	이승호	이승호
16	위원	교무처장	최병조	최병조
17	위원	학생·취업처장	박용호	박용호
18	위원	기획예산처장	박문주	박문주
19	위원	연구처장	한민섭	한민섭
20	위원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이남식	이남식